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 송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월 일	2025.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 이유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신고수리, 변경, 최대액출자자 변경, 폐업 및 휴업 신고에 따른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라디오·데이터·VOD PP ‘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정비 (안 제4조)

- 1)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을 신고로 대체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규정에 ‘신고’를 추가하고, 기존 등록신청서 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 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항목에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요건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부속 서류(기업진단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요령 등의 서식)에 ‘신고’를 반영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라디오·데이터·VOD PP ‘변경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안 제8조, 제9조)

- 1)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방송 분야 변경 시 기존의 변경등록 대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방송법 제15조제1항), 기존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신고와 겸용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안 제8조제3항), 교부 서류에 신고증을 추가함(안 제8조제9항)
- 2)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에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9조제2항), 교부서류에 ‘신고증’을 추가함(안 제9조제3항)

다. 라디오·데이터·VOD PP 신고수리, 휴업·폐업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안 제4조, 제21조)

- 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교부(안 제4조제5항) , 등록증 재교부(안 제4조제6항) , 휴업·폐업 신고 관련 규정(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신고’ 를 추가하고, 신고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9조의2”를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등록요건”을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신청기업”을 “등록신청·신고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증 재교부”를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재교부”로 한다.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록·신고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각각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 (제4조제1항 관련)”을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서식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서식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을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고)신청서”로 한다.

별표, 별지 제3호의서식,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 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u>등록신청</u> 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 ----- <u>등록신청서</u> <u>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u> <u>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u>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u> <u>른 송출시설의 소재지</u>	7. <u>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또는</u> <u>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u> <u>송출시설의 소재지</u>
8. <u>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요</u> <u>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u> <u>단보고서</u>	8. <u>법 제9조의2제1항-- 등록요</u> <u>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u> <u>신고요건</u> ----- -----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 사업 <u>등록신청기업</u>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 ----- --- <u>등록신청·신고기업</u> ---- -----. -----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8조(변경허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

④ -----
-----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

1. ~ 3. (현행과 같음)

⑤ -----
-----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⑥ -----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재교부-----.

제8조(변경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⑧ (생략)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생략)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 -----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 또는 신고한 -----

-----.

③ -----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
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
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
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
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
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
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
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
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
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
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
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
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

-----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
고증-----
-----.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

--.

② -----

----- 승인장, 등록증 또
는 신고증-----

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1.·2. (생략)	-----. ----- ----- -----. 1.·2. (현행과 같음)
--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제4조제3항 관련)

적용 범위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만 적용한다.
진단자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실시한다. 2) 진단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3) 진단서류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기준일	1) 신규등록·신고: 등록 신청 또는 신고 전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4) 법인분할: 법인분할 등기일
진단서류	1)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서류
용어의 정의	1) “실질자산 “이란 제시된 총자산에서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 “이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희토지, 논밭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 “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 “이란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 “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진단방법	1) 진단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진단보고서 진단의견란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는다. 가)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적격 나)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부적격

자산 및 부채 의 평가	2) 진단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이라고 적는다. 가)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거짓이라고 인정한 경우 나) 진단을 받는 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그 밖의 각종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게을리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가)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나)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다)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라)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할 자산 마) 무형자산(자체 제작했거나 외부에서 취득한 방송프로그램을 계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선급비용 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2) 모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된 잔액증명서와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모든 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 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3) 매출채권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또는 받을 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잔액조회에 의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나) 매출채권 등은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 범위에
-------------------------	--

	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5) 대여금은 전액 점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6)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나) 국채·공채·사채 또는 그 밖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해당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라)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점업자산으로 본다. 7)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 증명서류 및 재고자산 출납장부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점업자산으로 본다. 8)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9)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10)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하여 부외부채(簿外負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11)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電信換賣渡率)에 따른 환율로 평가한다. 12)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그 설정 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 중인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의 평가	1) 실질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점업의 경우에는 점업자본을 추가로 빼며, 점업자본이 점업기준 자

	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자본금을 뺀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신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한다. (1)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해당 전입분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해당 증자분에 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2)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 경리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로 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	--

() 재교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개요	사업의 종류	허가·승인· 등록·신고 번호	
	허가·승인·	방송분야(방송채널	
	등록·신고일	사용사업자에 한정합니다)	

재교부 사유

「방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4조제6항, 제5조제6항,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에 대한 재교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서, 등록증, 신고증 또는 승인장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고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1)}	
	(종합편집실)	(전화번호:)
	주전송장치	(전화번호:)

주1)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소재지를 명기

방송 개요	방송유형	방송분야
	채널명	자본금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운용개시 예정일	
----------	--

「방송법」 제9조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편성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삭제 <2018. 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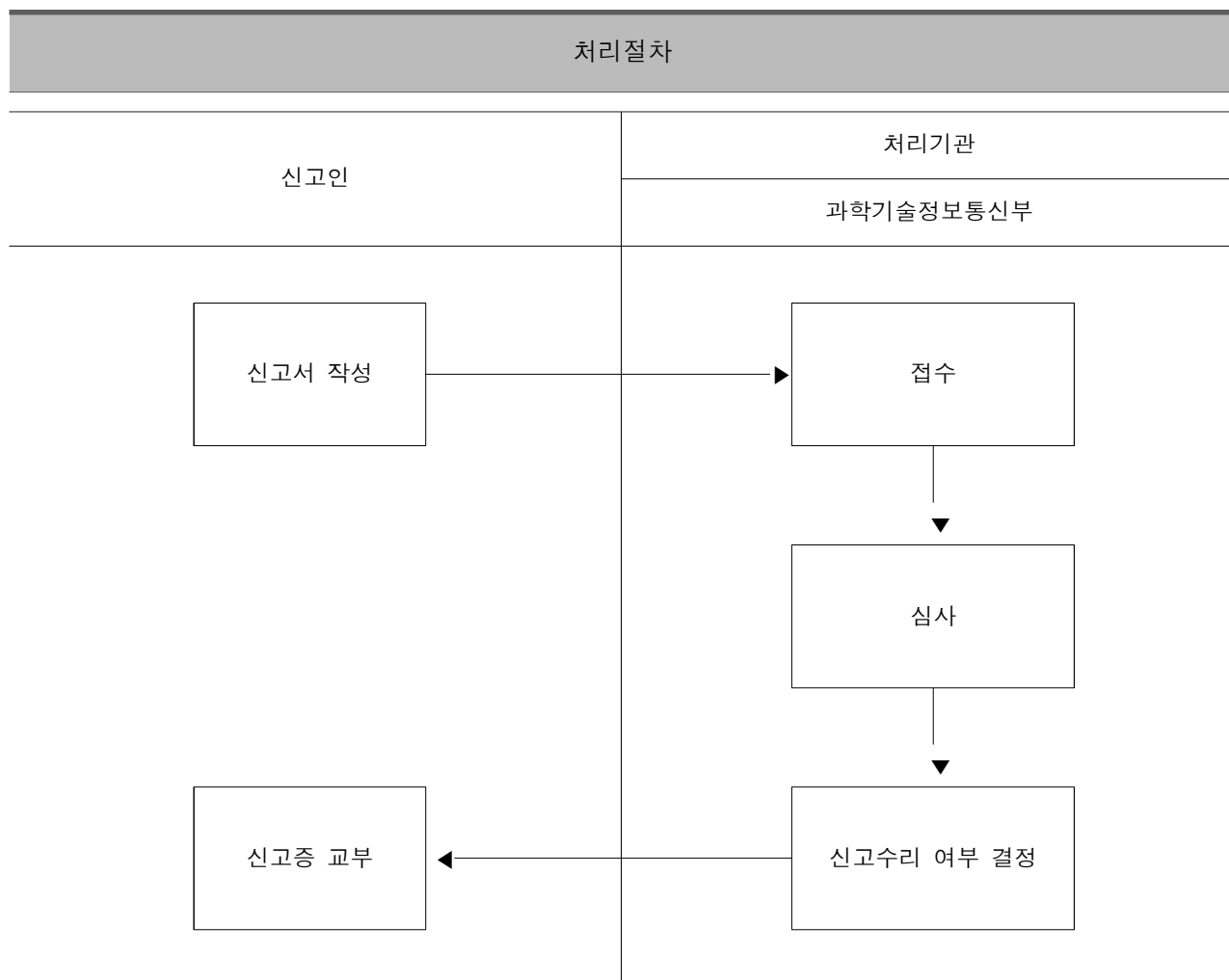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업진단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진단 구분	[] 등록·신고 []양수 []합병 []분할				
채널명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1)}					
진단신청 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주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또는 법인 대표주소를 명기

겸업 내용		
종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등록·신고 기준 자본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귀하

첨부서류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회계장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서류
------	---

기업진단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진단 구분	[] 등록·신고	[]양수	[]합병	[]분할
채널명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1)}				
신청자 제시 자본금액(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주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또는 법인 대표주소를 명기

진단결과 명세(진단기준일):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Ⅰ)		부채총계(Ⅱ)		
부실자산(Ⅳ)		자본금		
실질자산(Ⅴ) (Ⅰ-Ⅳ)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Ⅵ)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Ⅶ) (Ⅴ-Ⅵ-Ⅱ)		자본조정		
		자본총계(Ⅲ)		
겸업자본(Ⅷ) (c-d)		겸업자산(c):		
		겸업부채(d):		
방송채널사용사업 실질자본 (Ⅶ-Ⅷ)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자)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등록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기업진단명세서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기업진단명세서

업체명:

(단위: 원)

과목	회사 제시금액	평정		평정 후 금액	평정명세
		차변	대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② 단기금융상품					
③ 유가증권					
④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⑤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⑥ 미수금					
- 대손충당금					
⑦ 미수수익					
- 대손충당금					
⑧ 선급금					
⑨ 선급비용					
⑩ 이연법인세차					
⑩ 그 밖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① 상품					
② 제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그 밖의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투자유가증권					

과목	회사 제시금액	평정		평정 후 금액	평정명세
		차변	대변		
③ 보증금 ④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⑤ 장기성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충당금 ⑥ 투자부동산 ⑦ 그 밖의 투자자산 - 평가충당금 (2) 유형자산 ① 토지 ② 건물 - 감가상각 누계액 ③ 구축물 - 감가상각 누계액 ④ 기계장치 - 감가상각 누계액 ⑤ 방송설비 - 감가상각 누계액 ⑥ 차량운반기구 - 감가상각 누계액 ⑦ 건설 중인 자산 ⑧ 그 밖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① 영업권 ② 공업소유권 ③ 광업권 ④ 어업권 ⑤ 방송프로그램 ⑥ 그 밖의 무형자산					

과목	회사 제시금액	평정		평정 후 금액	평정명세
		차변	대변		
(겸업고정자산)					
자산 총계 (겸업자산)					
1. 유동부채 ① 매입채무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수금 ⑤ 예수금 ⑥ 미지급비용 ⑦ 미지급법인세 ⑧ 미지급배당금 ⑨ 유동성장기부채 ⑩ 선수수익 ⑪ 부채성충당금 ⑫ 이연법인세대 ⑬ 그 밖의 유동부채 (겸업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① 사채 - 사채발행차금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④ 부채성충당금 ⑤ 그 밖의 비유동부채 (겸업고정부채)					

과목	회사 제시금액	평정		평정 후 금액	평정명세
		차변	대변		
부채 총계 (검업부채)					
1. 자본금 ① 보통주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1) 자본준비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 ④ 그 밖의 자본잉여금 (2) 재평가적립금					
3.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① 사업확장적립금 ② 감채적립금 ③ 배당평균적립금 ④ 결손보전적립금 ⑤ 기술개발적립금 ⑥ 그 밖의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4.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과목	회사 제시금액	평정		평정 후 금액	평정명세
		차변	대변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전환권대가 ⑤ 신주인수권대가 ⑥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또는 매각가능증권평가손실) ⑦ 해외사업환산이익 (겸업자본)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명세

--	--

[] 방송채널사용사업
[] 전광판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 등록 []
신고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1)}	(전화번호:)

주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소재지를 명기

등록 (신고) 내용	채널명	사업의 종류
	등록(신고)번호	
	방송분야	
	최초 등록(신고)일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변경 예정일	
--------	--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변경등록
[] 변경신고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편성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50,000원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 2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삭제 <2018. 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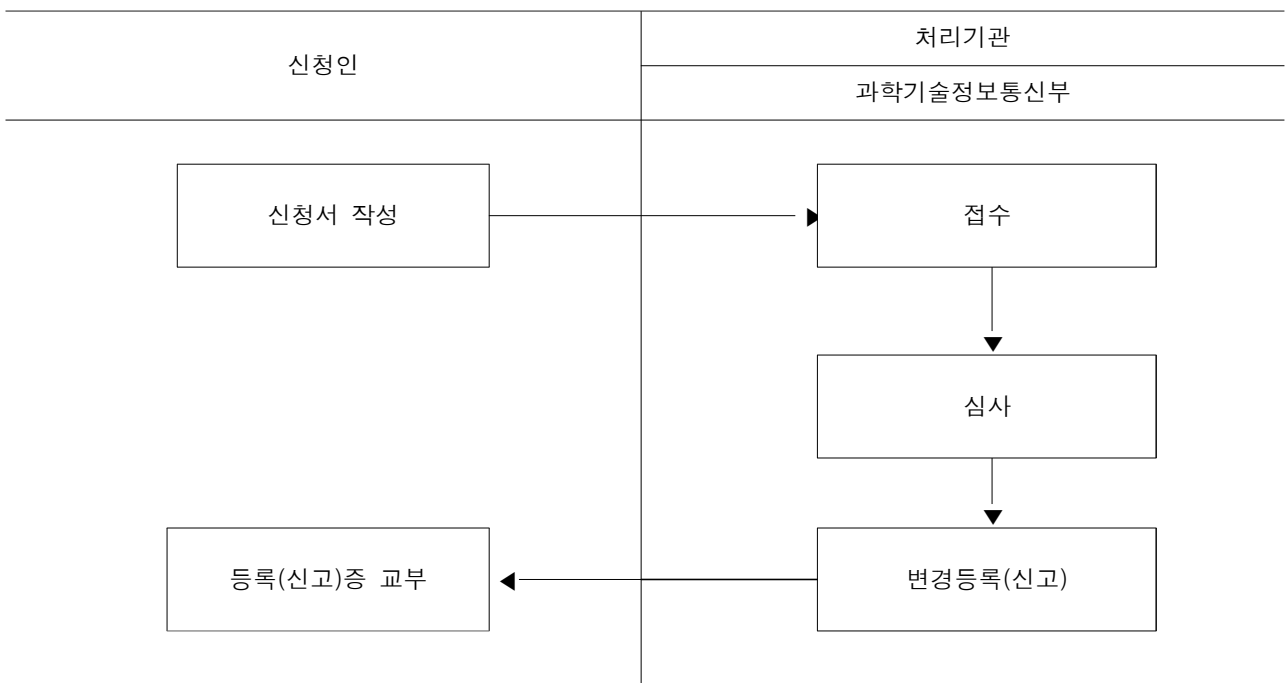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사업자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방송분야(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합니다)	
	방송유형(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합니다)	허가·승인· 등록·신고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1)} (전화번호:)		

주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소재지를 명기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방송편성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일				

「방송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합니다)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삭제 <2018. 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폐업 신고서 [] 휴업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허가·승인· 등록·신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1)}		
	사업의 종류		
주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별도의 주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실 또는 법인 대표주소를 명기			
휴업	휴업 예정일	사업재개 예정일	
	수신계약자 수 (유료방송의 경우)		
	휴업사유		
폐업	폐업사유		
	폐업 예정일	수신계약자 수 (유료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폐업
[] 휴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휴업 시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1부(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3. 휴업 시 역무제공계획서 1부(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532